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8-13호

2018년 상반기 인명구조사(1급, 2급) 응시자격 변경 공고

2018년도 상반기 인명구조사(1급 : 제7회, 2급 : 제14회)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21일

중앙소방학교장

---

1. 원서접수기간 : 2018. 2. 19.(월) 10:00 ~ 2. 25.(일) 18:00

※ 변경 전 원서접수기간 : 2018. 2. 19.(월) 10:00 ~ 2. 23.(금) 18:00

2. 응시자격

등급		응시자격 (기준일 : 필기시험 전일)
1급	변경 전	①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
	변경 후	①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②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5년이 경과한 사람
2급	변경 전	①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 ②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③ 구조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외근부서(종합상황실 등 상시 출동부서가 아닌 부서 제외)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※ ③, ④의 근무경력은 파견·휴직, 직위해제 등 기간 제외한 실 근무경력
	변경 후	①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 ② 구조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(④번 응시자격은 2018년 상반기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한함) ※ ②, ③의 근무경력은 파견·휴직, 직위해제 등 기간 제외한 실 근무경력

3. 변경사유 :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(훈령) 개정

※ 세부사항은 2018년 상반기 인명구조사 인증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고(중앙소방학교 공고 2018-10호)